

#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 ◎ 환경부공고 제2006-276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매 5년마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7).

나.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황사대책위원회와 황사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8 내지 제7조의10).

다.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조의11).

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일원화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0조의2 제3항 및 제4항).

마.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등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민간참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5 제2항 및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 내지 제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황사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 실적 및 평가
3.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황사발생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8에 따른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 연도별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8(황사대책위원회) ①정부는 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
2.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민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9(황사대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황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조정·검토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7조의10(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1(황사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간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환경부공고 제2006-276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

고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매 5년마다 황사피해 방지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7).

나.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황사대책위원회와 황사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8 내지 제7조의10).

다.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조의11).

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일원화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0조의2 제3항 및 제4항).

마.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등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민간참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5 제2항 및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 내지 제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황사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 실적 및 평가
3.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황사발생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8에 따른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 연도별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8(황사대책위원회)** ①정부는 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
2.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민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9(황사대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황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조정·검토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

제7조의10(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1(황사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간 국제협력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  
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  
어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  
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  
피해방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절차 및 방법 등  
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환경부 공고 제2006-270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 9월 19일

환경부장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환경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개선방안  
(2006. 8. 1. 규제장관회의)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  
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배출사업자의 예정배  
출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동 자료 미제출시 배출량을 조정하는 규정 삭제(안  
제17조 및 제23조)

## ◎ 대통령령 제2006-270호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중 “제  
1호에 따른 예정배출량 및 제2호에 따른 확정배출량

에 관한 자료”를 “제2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확정배출량은 그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 내배출량에 그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환경부 공고 제2006-271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9일  
환경부장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환경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개선방안(2006. 8. 1. 규제장관회의)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하고 경쟁을 통한 진단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업체에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2. 주요골자

가.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개선(안 제35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기관을 현행 환경관리공단 외에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및 수질분야 기술사사무소등 민간업체까지 확대(안 별표 11 제6호)

## ◎ 환경부령 제2006-271호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직전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68조에 따른 방류수 오염도검사시에는 방류수를 채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간 3회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  
 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  
 설을 등록한 수질관리분야 기술사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48호

### ◎ 환경부공고 제2006-268호

「건축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 환경부장관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건축법 개정(2005. 11. 8)으로 건설교통부와 환

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용토  
 록 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한 「친환경건축물의 인  
 증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  
 준을 고시한 건축물을 인증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인증제도의 운영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각 2년간 교대로 담당함(안 제3조).

다.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은  
 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방법 등을 정함(안 제4  
 조 내지 제6조).

라. 인증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인증기관  
 의 인증업무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조 내지 제10조).

마. 인증심사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이 공동고시로 정하고 개정 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  
 쳐야 함(안 제11조).

바. 인증등급은 100점 만점으로 각각 '최우수(85  
 점 이상)' 및 '우수(65점 이상)'로 함(안 제12조).

사. 인증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실시하며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인증신청 및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  
 및 인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자. 인증심사 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20조). ◀

